

2019년도 국방부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 필기시험 일시·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

시험장소

시험일시 및 시간



응시자 준수사항

||||



부정행위 등 유의사항

-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
 -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
 -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
 - 통신기기,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당해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
 -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
 - 병역·가정·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
 -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
- ※ 위 사유로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의 명단은 관보에 게재됨(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4항)

-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
 -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
 - **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**
 -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
 -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
 - **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**
 -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
 -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
 -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

- 그 시험을 무효로 함
 - **시험 종료 후에 답안지 작성을 하거나, 시험관리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하는 행위**
 - 답안, 인적사항 등 모든 기재(표기)사항은 시험종료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서 작성



필기시험 합격자 발표



취업지원대상 및 응시 · 가산 자격증 수정입력